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남·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송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본부장 김현동)
- 문의 : 경실련 김성달 국장, 서회원·장성현 간사(02-3673-2146)
- 시행 : 2019.08.20.(총 10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②]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시세의 53.4%에 불과
상위 29명 국회의원 임기3년 동안 868억원, 평균 인당 30억원 증가
2019년 평균 신고액은 77억 vs 시세는 144억, 절반으로 축소 신고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 제목 :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발표
-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 실태분석 결과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회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 질의답변 :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경실련〉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했다. 부동산 시세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1) :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 시세 144억원의 53.4%에 불과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회의원 상위 29명 부동산 재산 시세반영률

단위 : 만원

	신고가액	시세	차액	시세반영률
합계	2,233억 4,346	4,181억 3,632	1,947억 9,286	53.4%
평균	77억 149	144억 1,849	67억 1,700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 2천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 2천만원 더 낮았다(〈표.1〉 참고).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이 시세를 절반만 반영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시장 거래가격인 ‘시세’를 의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¹⁾.

다만, 일부 의원이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는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상업용지를 새로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분석 결과(2) : 상위 5위의 신고가액은 1,112억으로 시세 2,208억 대비 1,095억원 축소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57억 7천만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57억 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76억 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240억 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76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표.2〉 참고).

1)종부세 폭탄?...300억대 부동산 박덕흠 의원 연간 1900만원
<http://www.c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737>

〈표 2〉 부동산 재산 상위 5위(시세 기준)

단위 : 만원

순위	성명	정당	신고가액	시세	차액	시세반영률	비고 (고지거부)
1	박정	더불어민주당	352억 503	657억 6,983	305억 6,480	53.5%	
2	김세연	자유한국당	300억 1,891	657억 2,678	357억 787	43.6%	모
3	박덕흠	자유한국당	295억 1,398	476억 4,024	181억 2,626	62.0%	장남
4	홍문종	우리공화당	123억 949	240억 6,508	117억 5,559	51.2%	모
5	정우택	자유한국당	42억 1,780	176억 1,603	133억 9,823	23.9%	장남, 차남 손자, 손녀
합계			1,112억 6,522	2,208억 1,796	1,095억 5,274	50.4%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4%에 불과했다.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분석 결과(3) :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868억 증가, 평균 30억 시세 차이 발생

〈표 3〉 부동산 재산 증가 상위 5위(시세 기준)

단위 : 만원

순위	성명	정당	2016년		2019년		증가	
			신고	시세	신고	시세	신고	시세
1	김세연	자유한국당	214.1억	499.7억	300.2억	657.3억	86.1억	157.6억
2	박정	더불어민주당	337.8억	518.3억	352.5	657.7억	14.3억	139.4억
3	정우택	자유한국당	25.8억	62.5억	42.2억	176.2억	16.4억	113.7억
4	박덕흠	자유한국당	261.5억	414.0억	295.1억	476.4억	33.7억	62.4억
5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3.2억	3.9억	58.5억	70.5억	55.3억	66.6억
5명 소계 (평균)			842.4억	1,498.3억	1,048.1억	2,038.0억	205.7억 (41.1억)	539.7억 (107.9억)
29명 계 (평균)			1,834.4억	3,313.2억	2,233.4억	4,181.4억	399.0억 (13.8억)	868.2억 (29.9억)

2019년 신고가액과 2016년 신고가액을 비교하여 재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추정했다. 2016년 시세는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2019년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분석결과 임기 3년 동안,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16년 3,313억에서 2019년 4,181억으로 868억이 증가했다. 평균 1인당 30억원(년 1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명의 부동산 자산은 3년간 총 540억, 1인당 108억씩 증가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가액이 157억 6천만원, 매년 52억씩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2018년 단독주택을 취득하며 2019년과 비교해 66억 6천만원 증가했다.

분석 결과(4) :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 1건 보유

상위 29명이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적으로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 보유한 꼴이다. 토지가 많은 국회의원은 박덕흠(83건), 김세연(45건), 주승용(42건) 순이었으며, 주택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용주(27건), 박덕흠(7건), 강석호(6건) 순이다. 상가·빌딩·사무실 등이 많은 국회의원은 이철규(4건), 진영(3건)이다.(<별첨.2> 참고). 논·밭·임야는 주소지가 정확히 공개되지만, 상가·사무실이나 단독주택 등은 행정동까지만 공개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을 어렵게 했다.

분석 결과(5) : 국회의원 가족의 재산 고지거부 30명 중 19명

재산신고 거부도 문제다. 정우택(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7명), 강길부(장남, 차남, 손자, 손녀 등 6명), 강석호(모, 장남 2명), 박병석(장남, 차남 2명), 송언석(부, 모 등 2명), 오신환(부, 모 2명), 이용주(부, 모 2명), 지상욱(부, 모 2명), 금태섭(모), 김광림(장남), 김병관(모), 김세연(모), 나경원(부), 박덕흠(장남), 이은재(장녀), 이철규(차녀), 이학재(모), 장병완(모), 홍문종(모) 등 19명 국회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 고지거부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축소되어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하다.

축소공개, 고지거부, 허술한 심의, 불투명한 공개, 고지거부로 드러난 '반쪽짜리 재산공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도 문제이다. 박정 의원은 2014년 12월에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으나,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유한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120만원/㎡(2018년 기준)인데도 '0원'으로 신고했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 축소공개, 고지거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등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드러났다. 2006년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서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는 시세의 30~60% 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

제도개선 : 재산 형성과정 심사 의무화하고, 부동산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해야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둘째,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해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에 재산 변동을 쉽게 알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법령의 ‘실거래가’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 ※ 별첨1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시세 반영)
- ※ 별첨2 :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유형별)
- ※ 별첨3 : 국회의원 재산고지 거부 현황
- ※ 별첨4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변화

<p>〈 경실련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주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07.05.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 2019.07.10. 인사혁신처 질의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신고 기준(실거래가)에 대한 해석 ○ 2019.07.16.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와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019.08.12 국회의원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별첨.1〉 부동산 재산(시세 반영)

단위 : 천원, %

순번	성명	정당	상임위	신고가액	시세	차액	시세반영률
1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35,205,031	65,769,828	30,564,797	53.5
2	김세연	자유한국당	보복위	30,018,914	65,726,779	35,707,865	45.7
3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위	29,513,983	47,640,241	18,126,258	62.0
4	홍문종	우리공화당	교육위	12,309,493	24,065,085	11,755,592	51.2
5	정우택	자유한국당	산자위	4,217,795	17,616,030	13,398,235	23.9
6	이철규	자유한국당	산자위	5,270,879	12,618,057	7,347,178	41.8
7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토위	6,520,596	11,999,733	5,479,137	54.3
8	이은재	자유한국당	법사위	5,184,946	11,450,130	6,265,184	45.3
9	이학재	자유한국당	교육위	5,258,575	11,322,051	6,063,476	46.4
10	심재철	자유한국당	기재위	8,394,883	10,973,240	2,578,357	76.5
11	박성중	자유한국당	과기위	4,547,568	10,875,163	6,327,595	41.8
12	강석호	자유한국당	농해위	6,036,249	10,747,175	4,710,926	56.2
13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4,386,912	9,450,093	5,063,181	46.4
14	염동열	자유한국당	문광위	4,014,174	9,299,192	5,285,018	43.2
15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5,224,384	8,688,000	3,463,616	60.1
16	이용주	민주평화당	산자위	4,747,071	8,392,161	3,645,090	56.6
17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4,226,461	7,952,660	3,726,199	53.1
18	김광림	자유한국당	기재위	5,018,891	7,935,514	2,916,623	63.2
19	진영	더불어민주당	농해위	5,259,627	7,560,951	2,301,324	69.6
20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5,850,000	7,050,360	1,200,360	83.0
21	강길부	무소속	산자위	4,102,927	6,999,690	2,896,763	58.6
22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문광위	4,038,315	6,605,700	2,567,385	61.1
2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3,359,032	6,570,690	3,211,658	51.1
24	장병완	민주평화당	정무위	5,304,363	6,379,973	1,075,610	83.1
25	나경원	자유한국당	기재위	3,509,015	5,910,588	2,401,573	59.4
26	정진석	자유한국당	외통위	3,232,237	5,841,181	2,608,944	55.3
27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3,800,981	5,323,471	1,522,490	71.4
28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토위	2,374,166	3,997,590	1,623,424	59.4
29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무위	2,416,000	3,375,000	959,000	71.6
합 계				223,343,468	418,136,324	194,792,856	53.4
평균				7,701,499	14,418,494	6,716,995	

※ 2019년 3월 공개기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3월 공개)

※ 부동산 시세 조사 원칙

1. 공통 사항 - 최근 3년 이내 실거래된 경우 실거래사용. 실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 주변의 실거래가 평균값 사용.
2. 토지 - 해당 부동산 주변의 평균 실거래가 사용(최고가와 최저가 제외)
3. 아파트, 오피스텔 - kb시세 사용. kb시세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사용.
4.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 분양가 적용. 전매 제한이 없는 부동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시세 사용.
5.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빌딩, 기타 부동산 - 해당 부동산 주변의 같은 용도 건물의 평균 연면적 단가 사용.

〈별첨.2〉 부동산 재산(유형별)

단위 : 건수

순번	성명	정당	상임위	전·답·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상가·빌딩 사무실 근린생활시 설 등	도로·묘지 문화시설, 유지, 잡종지 등	합계
1	강길부	무소속	산자위	4	2	1	1	8
2	강석호	자유한국당	농해위	11	6	2	10	29
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5	1	0	0	6
4	김광림	자유한국당	기재위	11	3	2	2	18
5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2	3	2	0	7
6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0	2	0	3	5
7	김세연	자유한국당	보복위	45	2	1	4	52
8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13	4	0	2	19
9	나경원	자유한국당	기재위	1	4	2	0	7
10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위	83	7	2	5	97
11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7	2	1	1	11
12	박성중	자유한국당	과기위	8	2	0	7	17
13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1	2	1	0	4
14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토위	13	3	1	0	17
15	심재철	자유한국당	기재위	0	1	2	0	3
16	염동열	자유한국당	문광위	19	1	0	0	20
17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1	0	0	0	1
18	이용주	민주평화당	산자위	2	27	2	0	31
19	이은재	자유한국당	법사위	2	1	1	0	4
20	이철규	자유한국당	산자위	3	2	4	0	9
21	이학재	자유한국당	교육위	3	1	2	1	7
22	장병완	민주평화당	정무위	8	3	0	2	13
23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문광위	1	1	0	0	2
24	정우택	자유한국당	산자위	4	2	1	4	11
25	정진석	자유한국당	외통위	4	2	0	0	6
26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토위	42	3	2	11	58
27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무위	0	1	0	0	1
28	진영	더불어민주당	농해위	1	3	3	0	7
29	홍문종	우리공화당	교육위	6	2	0	6	14
합 계				300	93	32	59	484

〈별첨.3〉 재산 고지거부 현황

순번	성명	정당	상임위	고지거부자	고지거부 사유
1	강길부	무소속	산자위	장남	독립생계유지
				차남	독립생계유지
				손자1	독립생계유지
				손자2	독립생계유지
				손녀1	독립생계유지
				손녀2	독립생계유지
2	강석호	자유한국당	농해위	모	독립생계유지
				장남	독립생계유지
3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모	독립생계유지
4	김광림	자유한국당	기재위	장남	독립생계유지
5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모	타인부양
6	김세연	자유한국당	보복위	모	독립생계유지
7	나경원	자유한국당	기재위	부	독립생계유지
8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위	장남	독립생계유지
9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장남	독립생계유지
				차남	독립생계유지
10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토위	부	독립생계유지
				모	독립생계유지
11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부	독립생계유지
				모	독립생계유지
12	이용주	민주평화당	산자위	부	독립생계유지
				모	독립생계유지
13	이은재	자유한국당	법사위	장녀	독립생계유지
14	이철규	자유한국당	산자위	모	타인부양
				차녀	독립생계유지
15	이학재	자유한국당	교육위	모	독립생계유지
16	장병완	민주평화당	정무위	모	타인부양
				장남	독립생계유지
17	정우택	자유한국당	산자위	장남	독립생계유지
				차남	독립생계유지
				손자1	독립생계유지
				손자2	독립생계유지
				손녀1	독립생계유지
				손녀2	독립생계유지
18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무위	부	독립생계유지
				모	독립생계유지
19	홍문종	우리공화당	교육위	모	독립생계유지

〈별첨.4〉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변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정 1983.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재산신고 및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개 정 1993.06.11. 시 행 1993.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4급 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심사 강화)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의무화 <p>*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p> <p>제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p> <p>1.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p> <p>2.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p>	
<p>2005년 4월 고위공직자 3명이 부동산 투기수법인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불법적·편법적 재산 축적 혐의로 사직 → 2005년 4월 19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청원(대표의원 강창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와 시세 함께 신고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상세 기재(자산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재산공개대상자를 현재의 1급 이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p>→ 2006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p>		
개 정 2006.12.28. 시 행 2007.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실거래가 기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 <p>*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p> <p>제4조 ③ 제1항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12.28.공포 · 2007.6.29.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p>*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p> <p>제4조의4 법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는 실제 매입액 또</p>

	<p>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p> <p>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p>	<p>는 매도액을,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보상액을 말한다. <신설 2007. 6. 21.></p>
<p>2018년 4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공시가 기준 재산신고 제도 이용 실거래가보다 줄여서 공개한다는 지적</p> <p>→ 정부,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최초신고만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제기)</p> <p>- 인사혁신처 윤리정책 관계자, NTN(이상현 기자와의 인터뷰(2018.06.27.)</p> <p>“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행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가 아니다”</p>		
<p>시 행 2018.07.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p>* 부동산 재산신고 관련</p> <p>제4조2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p>